

원문기사에 피해자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 경우
반박문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뒤셀도르프지방법원 1992.2. 12 자 판결
-120 12/92 사건-

적용법조

노르드하인-웨스트팔렌주 언론법 제 11 조

판결요지

1. 어떠한 혐의나 추측의 의견이 보도된 경우라도, 독자들이 위 의견의 원문보도로부터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어떠한 사실관계를 간취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의견보도의 이면에는 반박보도의 청구가 가능한 사실상의 주장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독자에게 보도된 사실에 기초를 둔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추론인 경우에는 그 거시된 사실이 위 추측을 정당화 시키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측에 대하여는 반박보도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이미 원문기사의 보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이 포함되어져 있거나 또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 경우에는 반박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개요

피 신청인은 「W」 잡지의 발행인이다. 「W」 잡지의 「기업 및 시장」란에는 『검찰청은-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제목하에서, 특히 이 사건 신청인 본인을 다루고 있는 편집부의 기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 기고의 공표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박문의 게재를 요청하고 있다.

판결이유

신청인이 한 위 반박문의 게재청구는 노르드하인-웨스트팔렌주 언론법 제 11 조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그의 반박보도의 청구를 적법한 시기에 즉 위 법 제 11 조 제 2 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체 없이」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신청인이 그의 반박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경해 왔고, 또한 적법한 반박문의 게재에 관하여 제 2 피신청인의 법적 보조자와 협상을 해온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지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 점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반박보도의 청구는 이유 없다. 왜냐하면 청구된 반박문은 그 제 2 및 제 3 항의 점에 있어서, 원문기사에 대한 하등의 적법한 반박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릇,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배치되는 사실상의 주장에 의하여 반박하는 경우에만, 반박보도청구는 적법한 것이다. 반박문의 제 2 항에서 요약되고 있는 바와 같은 원문기사의 내용, 즉 「익명의 스위스 회사 M 의 이면에는 추측컨대 재산관리인 E 가 숨겨져 있다」라는 의견은 반박보도의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하등의 사실상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어떠한 진술이 추측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이로써 바로 위 진술이 사실상의진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혐의나 추측의 의견 진술 속에서도 사실상은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의 주장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항상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된 진술을 보도한 기사의 독자가 그 사실관계의 핵심으로부터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사실관계를 간취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고, 또는 그 혐의의 진술이 확실히 가치 평가적인 추론을 표시하고 있느냐의 여부인 것이다 (Seitz/Schmidt/Schö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2.Aufl. Rd-Nrn. 301 및 320 참조).

다툼의 대상으로 된 위 기고문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익명의 스위스 회사 M 의 이면에는 추측컨대 재산관리인 E 가 숨겨져 있다」라는 진술은 곧바로 사실상의 내용, 즉 신청인이 사실상 위 스위스회사 M 의 이면에 숨겨져 있다. 즉, 그가 위 회사에 확실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추측이라는 형식을 취한 위 진술은 독자들에게 대하여 분명히 위 기고문에 담겨져 있는 평가에 관련되는 사실 및 신청인의 위 M 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련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청의 조사관의 확인에 의하면 M 의 행정관리실에 신청인의 고객으로서 오랜 동안의 친지인 S 씨가 앉아있었고, 나아가 신청인이 M 씨의 전권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위 추측이 사실무근이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신청인이 문제로 삼고 있는 피신청인의 추측은 독자들에게 알려진 사실에 기초한 단순한 가치평가 또는 추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거시된 사실이 위 추측을 정당화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반박청구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신청인은 오히려 주장된 사실에 대하여 반대되는 사실로서 반박할 수 있을 따름이다.

반박문의 제 3 항에 있어서는 신청인은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는 하다. 왜냐하면 「수사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E 는 M 의 포괄대리인으로서 나타났었고, 그는 M 을 위해서 모든 행위 예를 들면 K 은행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행위까지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문보도의 기재로부터 신청인이 M 을 위한 포괄대리인이고 또한 그 자격으로서 G 은행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었다는 피신청인 자신의 주장을 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M 의 포괄대리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M 을 위한 포괄대리인으로서 나타난 적도 없으며, 특히 포괄대리인으로서 M 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한 적도 없고, G 은행에 있어서 유가증권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신청인의 반박문은 원칙적으로 역시 적법한 반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원문기사에 피해자의 입장이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박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Wenzel, Das Recht der Wort – und Bildberichterstattung, 3. Aufl. 424 면 참조). 이 사건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이 사건 분쟁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기고문에는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원문기사에 있는 진술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즉 「E 스스로도 포괄대리권을 다두고 있으나 어느 범위에서 다른 대리권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려고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대하여는 신청인이 M의 포괄대리인이었다는 것을 다두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그가 포괄 대리인으로서 행동하였다는 것을 다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이 어느 범위에서 다른 대리권이 존재하였는지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있다 라는 기재에 의하여 독자들에게 대하여 신청인이 포괄대리인은 아닐지라도 M의 수임인으로서 행동하기는 하였으리라는 추론은 명백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그의 반박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신청인은 오히려 그는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포괄대리인으로서 행동한 적도 없었다는 반박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원문기사에서 이미 보도되고 있는 그의 주장만을 다시 조사절차에서 되풀이하여 진술하고있기 때문에 그는 위 반박문의 보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제 1 점에 대한 반박보도 요구가 정당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반박문은 고도로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축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반박문의 일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박문의 게재청구는 그 전체에 있어서 기각되어야만 하는 것이다(Seitg /schmidt/ Schöner a. a. O. Rd – Nr.582 참조) .